

직원인사위원회규정

1996.03.01.제정 1999.04.07.일부개정 1999.05.01.일부개정 2012.08.01.일부개정
2016.03.01.일부개정 2018.06.26.일부개정

<총무팀>

제1조 (설치목적) 본 규정은 직원인사규정 제7조에 의거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명대학교 직원인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, 회무를 통할한다. 단, 사무처장이 궐위될 경우에는 총무팀장이 위원장이 된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)
③위원은 총무팀장과 노조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행정팀장 이상의 보직자 가운데 총장이 지명하는 3인,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2.8.1. 2016.3.1., 2018.6.26.)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직원인사담당자로 한다.

제3조 (임기)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회의) ①본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나 본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18.6.26.)

제5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하고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- 1. 직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
- 2. 직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
- 3.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- 4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의 직원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6조 (제척사유) 본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거나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다.

제7조 (준용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9. 4. 7.)

본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